

#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70호)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6. 30

# 고성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7. 2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9. 7. 13

## 2. 제정이유

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농촌일손 부족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노동력 절감에 기여코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기계 대여, 사용료 징수, 농기계이용현장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 함(안 제4조)

나.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요원을 둠(안 제6조)

다. 사용허가 기준은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2일 이내로 함(안 제8조)

라. 대여(사용)료는 구입가격, 농가부담 등을 감안 1일 최저 5,000원으로  
하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(구입가의 0.2% 기준)을 적용 5,000원  
단위로 정함(안 제9조)

마. 농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등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허가·취소 또는 정지하고 대여 농기계의 출고 후에 일어나는 인적·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짐(안 제13조, 제14조)

바. 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 및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함(안 제16조)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9- 491호(2009. 5. 25 ~ 2009. 6. 15 )
- 의견 제출사항 :

### 나. 관계법령 :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 의무)

『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』

### 다. 합의 : 관련부서 합의됨

###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대형,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에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니다.
- 조례는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, 문장의 구성 및 조항별로 연계되는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안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기계운전 요령을 단시간에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
- 안 제17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나 제도적 안전망을 위한 보험가입 등 조치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농업인에게 대여할 농기계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수요가 많은 농기계부터 확보토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, 대여하고 반납시 기계청소, 고장여부 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 6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대여은행을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곳 보다 이용하는 '농민의 접근성 등  
군 지역농협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?
- 답 : 지역농협과 몇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설치를 하겠다는 농협이 없어  
센타에서 운영을 하면서 차츰 지역농협으로 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.
- 문 :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에 국민  
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가난하여 농지가 없을 것인데 필요가  
있습니까?
- 답 :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자기 농지는 없으나 임차하는 경우가 있기  
때문에 그렇습니다.
- 문 : 농기계 대여사업 자체는 위탁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.  
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사용자가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 
어떻게 합니까?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합니다.
- 답 :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규칙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문 :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1항1호와 3호의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 
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중적인 성질로 3항을 삭제 요청합니다.
- 답 :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.
- 문 :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한 장소에 모아서 합니까?
- 답 : 네 그렇습니다.
- 문 : 사용자와 다음 사용자와의 농기계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 
작업종료 후 반환시 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인계인수할  
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답 :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.

## 7. 토 론 : 없음

## 8. 심사결과 :

- 2009. 7.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

고성군조례 제 호

##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1항 “3호”를 삭제한다.

## 신 · 구문 대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1조 (사용료의 반환) ①남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p>1~2 (생략)</p> <p><u>3.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</u></p>	<p>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_____</p> <p>_____</p> <p>1~2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. 삭제</u></p>